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1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부 규정을 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하고 심의대상 확대 (안 제2조)
- 나.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라. 수당과 여비 규정 (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2015.11.19.시행)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음.
-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안 제5조의2)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

# 참 고 자 료

## 1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